

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사지원서(직업교육사항) 작성 가이드

- 일반직 6급 지원자 대상 -

I. 안내 목적

- ‘직업교육’ 사항과 관련, 아래 상세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작성 오류 및 착오 기재를 방지하기 위함

II. ‘직업교육’ 사항의 각 기재항목별 안내

1. ‘직업교육’ 이란?

- (설 명) [붙임1] 「학교교육사항 작성 가이드」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사항으로 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등으로 증빙 가능한 교육기관에서 직무 관련 교육을 수료한 경우
- (예 외) 직무 특정이 불가한 기업체 등에서의 ‘신입사원 교육’, 일반 학원 수강 이력 등

2. 교육분야 - 기재항목

- (설 명) 우리 원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교육분야를 총 3가지로 정리(아래 <표-1> 참조)한 것으로, 지원자는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 중 3가지 분야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음
- (작성 유의점) 교육과정명만으로 해당 교육분야와의 관련성 유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‘주요내용’ 항목을 통해 관련성 여부를 소명할 것

<표-1> 직업교육사항 교육분야

연번	관련 교육분야
1	공정거래 분쟁조정 관련 및 기타 법학 분야
2	경영·경제·사무업무 관련 분야
3	직무공통(직업기초능력) 분야